##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0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민병덕・이강일・강준현

이정문 · 김남근 · 이인영

박상혁 · 김현정 · 강훈식

정준호 · 김용만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 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 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 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신설 등).
-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 (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 라.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3조).

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 법률 제 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가맹점사업자의 의제) 가맹지역본부는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의2, 제41조제2항,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가맹점사업자"로 본다.

제14조의2제2항 중 "가맹점사업자단체는"을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 횟수·주 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 1.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
- 나.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입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 야 하다.
-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 목적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구성원의 자격·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사업자단체"라 한다)가 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1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제3항·제5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 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의3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 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조의2(가맹점사업자의 의제)
	가맹지역본부는 제12조, 제12조
	의5, 제13조, 제14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의2, 제
	41조제2항,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가맹
	점사업자"로 본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
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생	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2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	
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	
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	
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u>가맹점사</u>	<u>가맹점사업자단</u>
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	체 중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	
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
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은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 횟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 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 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 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⑤ (생략) <신설> ·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등록된 가맹 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 1.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u>것</u>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것
  -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 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가 가입

- 나.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 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 입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
   목적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구성원의 자격·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 록사업자단체"라 한다)가 그 등 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 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 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는 등록된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1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못한 경우
-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한 경우
-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 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 제33조(시정조치) ①-----

#33조(시정조지) (1)공정거래위원 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 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 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 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 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 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 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 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 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 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 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 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7 (생 략)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

<u>제14조의2제3항·제5항</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2
<u>제1호 및 제2호</u> -

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신 설>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1. (현행과 같음)
- 2. 제14조의3에 따른 가맹점사 업자단체의 등록 •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